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 장관 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 일시의 변경(안 제3조)

안건에 대한 언론 관심도를 높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현행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최 요일을 조정함

나.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법질서 확립 및 인권 제고,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회의 구성원에 법무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추가함

다. 회의 운영 지원 관련(안 제11조 등)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문(안 제11조) 및 상정된 안건의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의무(안 제12조)를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위원장 및”을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 실무조정회의는 관계 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등) 회의 는 매월 넷째 주 <u>금요일</u> 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 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등) ---- ----- <u>수요일</u> ----- ----- ----- -----.
제5조(구성원 등) ① 회의는 기획 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u>행정안전</u> <u>부장관</u>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 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 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 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 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u><신 설></u>	제5조(구성원 등) ① ----- ----- ----- <u>법무부장관</u> , <u>행정안전부장관</u> ----- ----- ----- ----- ----- <u>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u> <u>위원장 및</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 실 <u>무조정회의는 관계 부처 등에</u> <u>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u> <u>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1. <u>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u> <u>위하여 필요한 사항</u> 2. <u>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u>

<u><신 설></u> <u>제11조 (생 략)</u>	<u>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 관계 부</u> <u>처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u> <u>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u> <u>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u> <u>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u> <u>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u> <u>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u> <u>보고할 수 있다.</u> <u>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7256